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구 직 자 취 업 촉 진 및
생 활 안 정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득 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하고, 비과세 근로소득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

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 1)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
- 2)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

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한대상 개정(안 제5조제1항)

- 1)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
문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제한
- 2) 전역예정장병 가운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상담 등에 참
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수급자격을 인정
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참작사유 명확화 및 고시 위임 규정 신설(제11조제1항)

- 1) 의무불이행시 참작사유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를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없었던 경우로 명확화
- 2) 이에 준하는 경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여 수급자가 질병·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생
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4. 참고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를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같은 법 제12조제3호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진학”을 “진학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복무 중인 사람(다만,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을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 ③ (생략)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④ ----- ----- ----- ----- ----- ----- ----- ----- ----- ----- ----- --.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 ----- ----- ----- -- <u>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같은 법 제12조 제3호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한다</u> -----

2. (생략)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

----- 60-----.

② (현행과 같음)

③ ----- 4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① -----

사람을 말한다.

1.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군복무 중인 사람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신설>

-----.

1. ----- 진학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자격증 취득-----

2. 군복무 중인 사람(다만,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

②・③ (생략)	<u>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u> <u>정하여 고시하는 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연 락 처	(044) 202 - 7195